

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맹진영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07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3월 30일

발 의 자 : 맹진영, 김인호, 김혜련, 신원철,  
김광수(도봉), 양준욱, 서윤기,  
이현찬, 최웅식, 이순자, 김미경,  
김문수, 박준희, 김선갑, 오봉수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 필요

## 2. 주요골자

가.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(안 제2조의2)

나.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기능을 규정함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중소기업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·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
2. 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3. 중소기업 관련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4.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
5. 중소기업 관련 설명회·상담회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2(책무)제2항에서 “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·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발생 가능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  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 제2조의2(책무)제2항에서 “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·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·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 규정하고 있는 바, 서울시의 예산지출 또는 지원내용이 명시적이지 않고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남 승 우
사업평가팀장	여 차 민
분 석 관	이 정 수

☎02-3705-1280, e-mail(intezer@seoul.go.kr)